

유럽연합(EU)의 언어 정책

이복남 수원대학교 인문대학 프랑스어문학과 교수

1. 머리말

오늘날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회원국 28개국, 인구 약 5억 명 이상,¹⁾ 영토 427만km²에 달하는 거대 정치·경제 공동체로 변모했다. 국가 연합도 아니요, 연방제도 아닌 초국적인 통합체인 유럽연합은 지난 1957년 유럽 6개국²⁾이 모여 로마 조약(Treaty of Rome)을 체결함으로써 출범하였다. 이후 1992년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가 유럽연합(EU)으로 발전하고 유로존 태동의 초석이 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Treaty of Maastricht)을 체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유럽연합이 탄생했다. 이 조약으로 유럽 단일 시장이 확립됐고 유럽의 공동 안보·국방정책도 가능해졌다. 또한 이를 기초로 ‘유럽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주와 이동을 보장하는 쉥겐 조약(Schengen Agreement)도 도입됐다.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Treaty of Amsterdam)

1) 유럽 연합 인구, 2014년 1월 1일 기준 507.4백만 명, 유로스타트 통계

http://epp.eurostat.ec.europa.eu/cache/ITY_PUBLIC/3-10072014-BP/EN/3-10072014-BP-EN.PDF

2)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은 무엇보다 유럽연합의 정치적 기능을 강화시켰다. 유럽연합의 정치, 사회, 경제적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질주는 계속되어 2005년, ‘하나의 유럽’을 지향하는 유럽연합 헌법 초안을 마련했으나 비준에 실패하자 2007년 12월, 유럽연합 27개국 회원국 정상들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에 서명했다.

유럽연합에서 교육과 언어 정책 부문은 각 회원국의 관할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한 유럽연합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문화 정체성과 사회 통합, 연대감 조성을 위해 언어 다양성을 수호하고 언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유럽연합의 다언어주의 개념은 언어학적 정의가 아닌 실무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여러 다른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개인의 언어 능력, 단일 지역에 상이한 언어 공동체가 공존하는 것, 1개 언어 이상으로 운용되는 기구의 정책적 선택을 동시에 의미한다.

다언어 병용(Multilingualism) 정책을 통해 언어 다양성과 문화 간 대화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유럽연합은 언어 학습의 증진을 정책 활동의 중심에 두고 있다. 유럽연합 시민 각자가 적어도 모국어 이외에 2개 외국어를 구사하도록 권장하는 ‘모국어 +2개 언어 습득’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시민 약 5천만 명이 사용하는 유럽연합 공용어가 아닌 유럽 지방어(지역어)·소수어의 사용 또한 지원한다.

2. 유럽연합 언어 다양성의 증대

시기에 따라 거듭된 조약 체결을 통해 출범 시의 경제 공동체에서 정

치 공동체로, 또한 ‘시민의 유럽’으로 숨 가쁘게 변모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신규 회원국도 계속 증가해 왔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한 1992년 이후 지난 2013년까지 16개국이 신규로 유럽연합에 가입한 결과 유럽연합 회원국은 28개국으로 증가했다.

특히 2004년과 2007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됐던 중·동부 유럽 국가를 단일 유럽으로 통합하는 역사적인 유럽연합의 5차, 6차 확대가 마무리되면서 유럽연합은 동서 유럽 판도를 아우르는 27개 회원국의 결집체가 되었다. 2013년 하반기에는 크로아티아가 유럽연합에 합류해 유럽연합은 28개 회원국 시대가 열렸다.

일곱 차례에 걸쳐 회원국이 늘어나면서 지난 1957년, 4개 언어로 출발했던 유럽연합의 공용어 수는 2004년 5월 이전에는 11개 언어, 2007년, 23개 언어로 배가되었으며, 2013년에는 크로아티아어(語)가 추가되어 24개 공용어를 사용하는 미증유의 언어 모자이크를 이루게 되었다. 유럽연합과 같은 다언어 공용어 체제를 견지하는 국제기구는 인류사에서 전무후무하다.

공용어뿐만이 아니다. 유럽연합의 언어 다양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는 공용어 위상을 얻지 못한 60개 이상의 지방어(지역어)³⁾와 소수 민족 언어가 있으며 집시어 등 이주민들이 사용하는 비유럽어도 다수 공존하고 있다. 소수 언어는 유럽의 전통 유산으로 정책적인 보호의 대상이지만 유럽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사용되는 집시어는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유럽연합의 언어 현실은 유럽 시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언어적 권리와는 괴리를 보이고 있다.

3) Regional Languages: 이 글에서는 지방어와 지역어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3. 유럽연합 언어 정책의 변천과 공용어 제정 규칙

통합된 유럽에서 다언어 구사는 시민들이 경제, 직업, 교육 분야에서 기회를 얻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다언어를 구사하는 노동력의 이동성은 유럽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유럽연합의 초국적인 공동체 언어 정책과 프로그램은 유럽경제공동체(EEC) 시기부터 시대 상황에 부응하면서 서서히 진전되어 왔다. 먼저 1951년의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조약은 프랑스어로만 작성되었다. 교육, 문화에 대한 조항이 없는 1957년의 로마 조약은 묵시적으로 ‘초국적 경제 활동에서 자유로운 언어 사용(free language use in transnational economic activity)’이란 원칙을 도입하게 된다. 언어는 모든 경제 활동의 매개체이므로 공동체 역내에서 자유롭고 제약이 없는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공용어와 실무어는 조약에 의해 규정된 사항이 아니었다. 1958년 4월 15일자 ‘유럽경제공동체(EEC) 언어 체제 결정’에 관한 이사회 규칙(Council Regulation No. 1/58)에 의한 것으로 이 규칙에서 당시 유럽경제공동체의 언어 체제가 결정되었다.

즉, 공용어를 규정하는 최초의 공동체 법규인 이 규칙 제1조에서 당시 회원국의 공용어인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의 4개 언어를 유럽연합 기관의 공용어 및 실무어로 규정했다. 이후 유럽연합의 확대에 따라 이 단순하고 좀 모호한 규칙은 공용어의 개수 부분만 계속 수정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최초의 6개국 4개 공용어 체제는 1973년 영어와 덴마크어 2개 공용어가 추가됨에 따라 6개 언어가 되었고, 15개 회원국 시대에는 11개 공용어로, 2007년에는 27개국

23개 언어, 2013년에는 28개국 24개 공용어 체제로 변모하였다. 회원국이 가입할 때마다 공용어 또한 추가되었으며, 이렇게 가입국의 수에 비례해서 공용어의 수도 급속히 증가했다. 이와 같이 유럽연합 공용어의 평등주의 원칙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공용어와 실무어의 공식적인 구분은 없었다.

유럽연합 공용어 목록을 제시하고 그 사용에 관해 명시하고 있는 위의 공동체 규칙 제1조의 나머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각 회원국 정부나 개인이 공동체 기관에 보내는 회원국의 법
규 관련 문서는 발신자가 선택한 유럽연합 공용어 중 하나이
어야 하며 회신 또한 동일한 언어로 전달되어야 한다.

제3조: 공동체 기관이 각 회원국 정부나 개인에게 보내는 법적 문서는
그 국가의 언어로 전달되어야 한다.

제4조: 규칙이나 그 밖의 다른 공문서는 유럽연합 공용어로 작성되
어야 한다.

제5조: 유럽연합 관보는 유럽연합 공용어로 발간되어야 한다.

제6조: 유럽연합 기관은 이 언어 체제의 시행 방식을 내부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⁴⁾

1987년의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에는 언어권이나 사
용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로마 조약에서 명시되고 단일유럽의정서에서 반복된 ‘개인의 자유로

4) République française, *Le français dans les institutions européennes*, 2006, p.6
<http://www.rpfrance.eu/Publication-Le-francais-dans-les.htm>

운 이동'은 시민들의 언어 구사 능력을 전제로 한다. 이미 당시부터 언어 교육이 중요성을 띠기 시작했으며 링구아(LINGUA) 프로그램이 이 시기에 시행되었다. 역내 시장의 실현과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목표를 위해 이 프로그램은 5년간 2억 에퀴(ECU)의 예산으로 '덜 보급되고 덜 교육되는' 유럽어에 대한 양적, 질적인 지식의 증진을 위해 공동체 9개 언어와 아일랜드어,⁵⁾ 룩셈부르크어⁶⁾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기존의 유럽경제공동체(EEC)를 개정하여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 설립 조약으로 탈바꿈한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교육, 훈련, 청소년 조항인 제149조에서 '회원국의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에 대해 처음 명시하였으며 유럽 시민권 조항이 처음으로 구체화되었다.

1999년 발효된 암스테르담 조약에서는 유럽연합 시민권과 직결되는 '언어'와 관련된 새로운 조항을 명시했다. 즉 "유럽연합의 모든 시민은 의회, 이사회, 집행 위원회, 사법 재판소 등의 유럽연합 기구에 12개 조약어로 청원할 수 있고 동일한 언어로 회신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 권리는 명백히 유럽 시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조약에서 다언어 병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밝힌 조항은 상대적으로 적어 2개 조항뿐이다. 즉, 유럽연합의 12개 공용어를 열거한 조항인

5) 아일랜드어는 유럽공동체(EC) 공용어가 아니었으며 조약어(Treaty language)였다. 이것은 당시 아일랜드 정부가 아일랜드어는 아일랜드의 공용어(정치 및 국민교육 시 표준어로 쓰는 말)이나 실무어가 아니라는 사고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이것은 이사회 결의(Council Regulation No. 1)가 실무어와 공용어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아일랜드 정부가 간과한 결과였다. 그 결과 조약만 아일랜드어(Irish)로 번역되었으며 부차적인 문서는 영어로 번역되었다. 아일랜드어 사용자는 소수지만 아일랜드 헌법은 아일랜드어를 국어 및 제1공용어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면에 다수가 사용하는 영어는 제2언어로 규정하고 있다. 아일랜드어는 유럽 사법 재판소의 공용어 위상에 있으며 유럽 의회에서도 사용된다.

6) 문어는 없는 구어 상태이다.

제314조와 유럽연합 시민은 유럽연합 기구에 제314조의 언어 중 하나로 쓸 수 있고 동일한 언어로 답을 받을 수 있다는 제21조이다.)⁷⁾ 유럽의 통일성에 관한 새로운 총체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제41조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2007년 회원국에서의 비준에 실패하여 리스본 조약으로 탈바꿈한 ‘유럽 헌법 설립 조약’은 무엇보다 그때까지 유럽연합 조약에서 결핍된 것으로 지적된 유럽연합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의 보전을 헌법안의 중심에 위치시킨 바 있다. 즉, 2000년 12월, 니스(Nice)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을 헌법안 제2장에 병합시킴으로써 ‘유럽연합 시민권’ 개념을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하였다.

주지하듯이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은 당시 각국 차원이나 국제 또는 유럽 차원에서 표명되었던 다양한 권리들을 존엄, 자유, 평등, 연대, 시민권, 정의의 6장으로 구성된 단일 문서에 담아 유럽연합의 기본 가치와 유럽연합 시민의 정치, 경제, 사회적 권리를 정의한 것이다.

특히 “유럽연합은 문화, 종교, 언어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라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22조를 명시하여 유럽 유산과 문화의 주요소인 ‘언어 다양성’의 존중은 유럽연합의 문화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는 사고를 더욱 확고히 하게 하였다. 나아가 ‘차별’과 관련하여 이 법안에는

7) 여기 명시된 공용어는 독일어, 영어, 덴마크어, 스페인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그리스어, 아일랜드어(게일어), 이탈리아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스웨덴어이다. 암스테르담 조약 제8조 D에서는 11개 공식어와 게일어(아일랜드어)로 명시되었다.

<http://old.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C:1992:191:FULL:EN:PDF>

언어와 관련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문화, 종교, 언어 다양성을 존중’(2-21)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문화 다양성의 존중’으로만 표현되었던 문구는 새 헌법안에서는 ‘문화, 언어 다양성의 존중’(1-3)으로, ‘언어’라는 용어가 추가되었다. 언어적 권리와 관련된 유럽 시민권 개념이 더욱 확고해진 것이다.

4. 유럽연합 각 기관의 언어 정책과 통번역 전담 기관의 활동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용어 사용에서 유럽연합 출범 시부터 규칙에 명시된 다언어주의 또는 다중언어 병용 정책은 유럽연합 언어 정책의 원칙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공용어가 9개 언어이던 시기에 유럽공동체(EC) 기구의 공식 문서는 이 9개 언어 전체로 배포되었다. 유럽 의회 회의는 참석자의 언어로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원국의 9개 언어를 통역하기 위해서는 72개의 언어 조합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에스프리(ESPRIT)와 유레카(EUREKA)와 같은 통·번역 프로그램이 진척되어 자동 번역 기술 등 언어 공학이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유럽연합과 같은 다언어를 사용하는 기구는 통·번역 시 고도의 번역 수준을 요구한다. 통·번역 전문가들에 의한 언어 서비스는 유럽 다언어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며, 유럽인들이 유럽연합의 정책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약 4,000명 이상의 통·번역사가 집행 위원회, 이사회, 유럽의회에서 일하고 있다.⁸⁾

8) 2013 수치이다. http://ec.europa.eu/dgs/scic/about-dg-interpretation/index_fr.htm

유럽연합의 24개 공용어를 전체 공용어로 통·번역할 경우 552개 이상의 언어 조합이 파생한다. 이런 조합으로 매번 통·번역한다는 것은 복잡한 일이다.

오늘날 24개 공용어 체제에서 유럽연합의 모든 문서가 전체 공용어로 번역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 관련 사항 등 유럽연합 시민에게 중요한 공식 문서는 간행일부터 전체 공용어로 번역된다. 이외의 다른 문서들은 정보 성격에 따라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제공된다.

유럽연합 공식 사이트는 유럽연합 시민이 자국어나 이해 가능한 언어로 정보를 얻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럽연합 누리집상의 일반 정보나 찾아보기 등은 유럽연합 24개 전체 공용어로 게재된다. 기타 긴급한 정보나 일시적인 특수한 정보는 이들 정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사용자의 언어로, 적어도 2개 언어 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 당국 및 특정 단체, 개인과의 의사소통은 유럽연합 공용어 중 하나로 할 수 있다. 유럽연합 규칙과 법률 문서, 관보는 전체 공용어 및 실무어로 간행된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상의 제약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의 실무 문서만이 먼저 공용어로 번역된다.

유럽연합은 법규로 유럽연합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내부 언어 운용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는 회원국의 필요에 따라 대다수의 언어로 통·번역을 제공한다. 유럽연합 시민을 대표하는 유럽 의회는 출범 당시부터 각 의원이 자국어 실무 문서를 참조할 수 있도록 다언어 정책을 준수하고 있다. 유럽 의회는 총회, 의회 내부 기관과 위원회 회의, 정당 회의 시에도 다언어주의 원칙을 고수한다. 이 원칙은 문서에만 적용되며 유럽 의회의 문서는 자동적으로 23개 또는 24개 언어로 번역된다.

아일랜드어는 구어(oral)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이외의 23개어는 의회 총회에서 동시통역된다. 의회의 위원회 회의는 전체 공용어가 아닌 11개 언어로 통역된다. 기자회견은 프랑스어, 영어, 발표자의 언어 등 3개 언어로 제한되어 있다.

유럽연합의 행정 기관인 동시에 입법 보조 기관인 집행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공식적인 실무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이다. 홍보 목적 등 일반 대중을 상대로 의사소통을 할 경우에만 유럽연합 전체 공용어를 사용한다. 집행 위원회가 24개 공용어 전체로 번역하는 문서는 일반 공문서와 중요도가 높은 입법 및 정책 관련 문서이며 이는 전체 문서의 약 1/3 정도이다. 회원국 당국 및 개인과의 연락, 보고서, 내부 문서 등은 사례에 따라 필요한 언어로 번역된다. 내부 문서는 전체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번역된다. 수신하는 문서도 이와 유사하게 우선 이 세 언어 중 하나로 먼저 번역된다. 집행 위원회의 번역 총국은 경우에 따라 유럽연합의 공용어가 아닌 유럽연합 가입 후보국의 언어나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 번역도 담당한다.

원칙적으로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는 유럽연합의 언어 정책을 적용해서 3개 실무어를 사용해야 하나 점차 영어를 사용하는 추세로 기울고 있다. 영어와는 달리 프랑스와 독일어는 유럽연합의 모든 국가의 교육어이며, 유럽연합 출범 초기부터 쌍방향 통번역 인력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음에도 언어의 위상이 예전과 달라졌다. 영어는 통역 총국(Directorate General for Interpretation)에서 실무어로 사용되는 추세이다. 유럽연합 역내에서 공동 통역 및 회의 통역을 담당하는 집행 위원회 통역 총국의 통역사들은 점점 더 영어를 기축어로 사용하는 경향이다. 역설적으로 영어는 다언어주의를 표방하는 유럽에서 과거보다 더욱 지배어의 위상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프랑스어는 농업 총국과 같은 전통적으로

프랑스의 영향력이 큰 총국에서 주로 사용된다. 독일어는 보조적인 방식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집행 위원회는 언어 간 의사소통을 위해 통번역 전담 부서인 번역 총국(DG Translation)과 통역 총국 등 2개 총국을 두고 있다. 이 총국들은 집행 위원회 다언어주의 담당 위원이 관장한다.⁹⁾ 이 기관들은 집행 위원회 이외에도 유럽 이사회, 지역 위원회, 경제 사회 위원회, 유럽 투자 은행, 회원국 사무소 등에 통역사를 파견한다. 현재 유럽 이사회는 통역이 가장 많고(46%), 집행 위원회(40%), 나머지가 지역 위원회와 경제 사회 위원회, 유럽 투자 은행이다. (14%)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 직원 중 약 15%가 정규직 또는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통번역사이다.¹⁰⁾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 통번역 총국과는 별도로 산재해 있는 유럽연합 여러 기관의 번역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룩셈부르크에 ‘유럽연합 번역 센터(The Translation Centre for the Bodies of the European Union)’가 설립되어있다. 이 센터는 1994년 이사회 규칙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직원은 2백 명 이상이다.

5.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의 정책 활동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언어 정책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다양한 언어 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집행 위원회는 언어 정책 분야에서 회원국 전역에 걸쳐 정책 입안자 및 시민 사회와 긴밀한

9) 현재 담당 집행위 위원(Commissioner) 은 안드롤라 바실리우(Androulla Vassiliou)이다.

10) 2013년 수치이다. http://ec.europa.eu/dgs/scic/about-dg-interpretation/index_fr.htm

연결망을 구성해 다언어 병용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 왔다.

특히 ‘교육, 문화, 다언어 병용 및 청년 부문을 관장하는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의 교육·문화총국(DG EAC)’은 현재 유럽 언어 정책을 전략적으로 다섯 분야로 구분해서 운용하고 있다.

즉, 유럽연합의 공용어, 지방어(지역어), 수화(手話), 조기 언어 교육 추진, 이중 언어 교육 부문의 5대 정책 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과제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2년 바르셀로나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에 따라 유럽연합 시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이웃과 소통하며 공동 시장에서 직업적 역량과 이동을 증대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어 교육을 한다. 이 분야에서 유럽연합의 활동은 다양하다. 특히 유럽연합은 영어가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것이 언어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모국어 +2개 언어’ 습득이라는 목표하에 활동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개인과 국가별 언어 습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언어 역량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대학 학제를 개편하고 유럽 차원의 학점 관리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언어 교육과 습득 부문에서 혁신적이고 주도적인 계획을 포상하는 ‘유럽 언어 라벨’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 유로바로미터 조사에 의거하면 유럽연합 시민 약 26%가 2개 외국어를 구사한다고 답한 바 있다. 유럽연합의 도전은 최소한의 시간 안에 이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기존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나 현행 ‘에라스무스 플러스(Erasmus⁺)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의 이동과 교류를 증진시키고 리스본의제에 따른 ‘언어 2010’ 전략을 세워 언어 조기교육을 실시하

여 ‘유럽 고등 교육 지대’를 실현하기에는 유럽연합의 언어는 지나치게 과다하며 이는 유럽연합의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그 결과 영어는 점점 더 유럽 학계에서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¹¹⁾가 되어 가는 중이다.

2003년 7월에도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는 언어 습득과 언어 다양성 증진을 위해 45개로 구성된 ‘활동 계획’을 채택했다. 이 활동 계획에서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는 언어 평생 교육의 이점을 유럽 시민에게 강조하고, 모든 수준의 언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언어 병용이 활짝 꽃피우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3대 중심축을 밝힌 바 있다.

6. 제기되는 문제: 다언어주의 정책 실행에 따른 갈등과 한계

유럽연합의 다언어 병용 정책의 시행에 따라 유럽 시민의 외국어 습득 능력이 현저히 향상되고 언어 공학이 발전하는 등 여러 긍정적인 현상을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어(지역어)·소수어의 공용어 위상 요구, 실무어 지정 문제, 회원국 국내 언어 정책과의 갈등, 영어의 보편화 등은 유럽연합의 정책 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가입 시 국어 중 하나를 공용어로 신청한다. 아일랜드는 가입 당시 실용성을 이유로 국어인 아일랜드어(게일어)를 공용어로 신청하지 않아 조약어로만 운용되었다. 화자 수가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별 위상으로 조약의 번역 시에만 아일랜드어가 사용됐으며 지침(directive)은 아일랜드어로 번역되지 않았다. 2005

11) 모국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상호이해를 위하여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년 6월 13일 이사회(Conseil)에서 유럽연합 25개국은 아일랜드어를 2007년부터 21번째 공용어로 지정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이 회의에서 스페인 정부와 합의에 의해 스페인의 공동 공용어인 카탈루냐어, 갈리시아어, 바스크어를 유럽연합 기관 범주에서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문서는 선별적으로 이 언어들로 번역된다. 이들 언어는 공용어 위상을 획득한 것이 아니고 단지 공식 문서의 번역과 유럽연합 여러 기관에서 이들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그친 것이다. 이 3개 언어의 사용자 수는 유럽연합 공용어인 에스토니아어, 아일랜드어, 슬로베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몰타어 화자 수보다 월등히 많다. 이에 따라 공용어의 기준을 일정 인구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로 정하지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지만 그 실현성은 미지수이다.

유럽연합의 여러 국가들은 에스토니아에서 사용되는 러시아어와 슬로바키아의 롬어 등과 같은 소수어도 이 같은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브르타뉴어도 카탈루냐어와 같은 위상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회원국 영토의 전체 또는 일부에서 공용어의 위상에 있는 언어로 제한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브르타뉴어는 공용어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웨일스어, 사미어, 사르디니아어, 브르타뉴어의 경우 관련 당사국 정부는 이들 언어를 유럽연합 차원의 언어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은 소수어·지방어의 위상을 재검토해 달라는 압력에 직면해서 2008년 웨일스어, 카탈루냐어, 바스크어의 통·번역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유럽연합의 실무어 사용에도 여러 문제가 대두된다. 1995년 확대 이전에는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의 공식 실무어는 네덜란드어를 제외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의 3개 언어만이 유럽연합의 여러 회원국에서 동시에 사용되는 유럽연합의 공용어였다. 만약 이 범주에서 유럽연합의 실무어를 상정한다면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공용어 위상에 있고 덴마크에서 폭넓게 이해되는 스웨덴어도 실무어 위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사이프러스에서 대다수 주민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느니 만큼 그리스어도 실무어 위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 가입 후보국 중에서는 터키어가 이 범주에 속한다. 또한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가입하게 되면 크로아티아어도 같은 조건에 놓일 것이다. 현행과 같은 유럽연합의 실무어 지정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영어의 보편화에 직면해서 특히 프랑스는 유럽연합 다언어주의 정책을 명분으로 프랑스어를 수호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2년 1월 유럽연합에서 프랑스어를 수호하기 위해 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프랑스 공동체, 세계프랑스어권국가연합(OIF: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 사무국 간에 공동 활동 계획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 기관에서 프랑스어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프랑스어의 보급을 위한 정보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현재 프랑스는 유럽연합 기관에서 프랑스어 문서 작성을 돕기 위해 프랑스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유럽연합에서의 프랑스어 사용’이라는 편람을 발간해서 프랑스어 사용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 편람 내용에는 총회, 장관회의, 이사회 실무회의, 위원회 회의 등 개최 일자가 확정된 회의 시에는 프랑스어 동시통역 서비스를 받도록 하며 사회를 보는 프랑스 대표는 프랑스어로, 발표자도 프랑스어로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회의 시 프랑스어 텍스트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최종 문서가 프랑스어로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프랑스어 문

서를 강력하게 요청해야만 한다는 내용과 함께 타 회원국 대표와 비공식적인 대화 시에도 프랑스어를 사용하며 불가피한 경우 상대방의 모국어로 대화하도록 권장하고 있다.¹²⁾

7. 맺음말

2012년 유로바로미터 통계에 의거하면 다언어 화자 수는 과거보다 증가했다. 유럽 시민의 45%가 모어 이외의 외국어로 대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유럽 시민의 54%가 적어도 하나의 외국어로 대화할 수 있으며 25%는 2개 외국어로, 10명중 한 명은 3개 외국어로 대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모국어 이외에 적어도 한개 이상의 외국어로 대화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은 회원국은 룩셈부르크(98%), 라트비아(95%), 네덜란드(94%), 몰타(93%), 슬로베니아와 리투아니아(각 92%), 스웨덴(91%) 순이었다. 직전 자료인 2005년 유로바로미터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한개 이상의 외국어로 대화할 수 있다고 응답한 유럽 시민의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회원국은 오스트리아(78%, 16% 증가), 핀란드(75%, 6% 증가), 아일랜드(40%, 6% 증가)였다. 그러나 2개 외국어로 대화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증가한 회원국은 이탈리아(22%, 6% 증가), 아일랜드(18%, 5% 증가) 정도에 그쳤다.

유럽연합에서 가장 많은 모국어 화자 수를 갖고 있는 언어는 독일어(16%), 이탈리아어와 영어(각 13%), 프랑스어(12%) 순이다. 화자 수가

12) République française, *Le français dans les institutions européennes*, 2006.
<http://www.rpfrance.eu/Publication-Le-francais-dans-les.html>

가장 많은 외국어를 언어 순으로 살펴보면 영어(38%), 프랑스어(12%), 독일어(11%), 스페인어(7%), 러시아어(5%)였다. 영어가 공용어인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26개 회원국 중 19개국에서 화자 수가 가장 많은 외국어는 영어였다. 유럽 시민들이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로는 텔레비전 방송 및 영화 시청(37%), 인터넷 검색(36%), 친구와의 의사소통(35%) 순이었다. 유럽 시민이 직장에서 외국어로 대화하는 경우는 27%, 해외에서 휴가 시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응답자의 50%였다.

대다수의 응답자는 적극적으로 외국어를 학습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약 23%는 외국어를 학습한 경험이 없고, 44%는 근래에 새로운 언어를 학습한 적이 없으며 학습할 의사도 없다고 답했다. 유럽 시민의 88%가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이 대단히 유용하다고 답했다. 유럽 시민의 67%는 그들에게 가장 유용한 2개 외국어 중 하나로 영어를 들었다. 이어 독일어(17%), 프랑스어(16%), 스페인어(14%), 중국어(6%)가 뒤를 이었다.

유럽연합 내의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84%에 달해 외국어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합의가 유럽 시민 사이에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¹³⁾

언어와 언어의 사용은 유럽 연합의 핵심에 놓여 있는 사안이다. 그간 유럽 연합이 다중언어 병용을 위해 수립한 여러 정책적인 시도는 이제 유럽 시민에게 낯설지 않게 다가가고 있음을 유로바로미터 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어를 중심으로 외국어 습득이 이루어지는

13) 2012년 6월 발간된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386-EUROPEANS AND LANGUAGES'에 나타난 수치이다.

현상에 대해서는 ‘모국어+2개 외국어 습득’ 정책 이외에는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통합된 유럽에서 유럽연합은 시민의 언어·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언어 평등주의를 수호할 소명이 있다. 이것은 유럽연합 공용어이건 아니건 간에 유럽연합 시민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 언어를 발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의 모든 언어가 유럽의 정체성의 근간이며 유럽문화유산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이복남(2004), EU 언어 정책: 언어 교육을 중심으로, 《EU연구》 제15호, 한국
외국어대학교 EU 연구소.
- 이복남(2005), EU 언어 정책: 지방어·소수어의 위상과 시민의 언어적 권리,
《유럽연구》 20권 2호, 한국 유럽학회.
- Allières, Jacques(2000), *Les langues de l'Europ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Calvet, Louis-Jean(2002), *Le marché aux langues*, Paris, Plon.
- Calvet, Louis-Jean(1996), *les politiques linguistiques*, Paris, puf.
- Doerflinger, Oscar(2001), Le multilinguisme dans les institutions européennes,
Robert Chaudenson éd., *L'Europe parlera-t-elle anglais demain?*, Institut
de la Francophonie Paris, L'Harmattan.
- European Commission, Special Eurobarometer 386. *EUROPEANS AND THEIR
LANGUAGES*, June 2012.
http://ec.europa.eu/public_opinion/archives/ebs/ebs_386_en.pdf
- Hagège Claude(2000), *Halte à la mort des langues*, Paris, Odile Jacob.
- République française, *Le français dans les institutions européennes*, 2006.
<http://www.rpfrance.eu/Publication-Le-francais-dans-les.html>

* 이외의 전자문헌 및 일간지는 각주에 표시함.